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5. 25 선고 2021가단5433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백혜연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0. 8. 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2020. 8. 4. 태안군에 접수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성립

D는 2015. 12. 3., 2016. 6. 30., 2019. 12. 23., 2020. 6. 30. 네 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는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하에 E조합으로부터, 2015. 12. 3. 127,200,000원, 2016. 6. 30. 1억 원, 2019. 12. 23. 1억 2,000만 원, 2020. 6. 30. 1,4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2. 22. E조합에게 D의 위 차용금 채무 합계 285,346,54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차전1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29. 'D는 원고에게 287,345,884원 및 그 중 285,220,9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나. D의 처분행위

피고와 D 사이에 2020. 8. 4.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이 사건 선박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8. 4. 체결되었고, 원고가 2021. 2. 22.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2015. 12. 3.경부터 2020. 6. 30.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1. 2. 22.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F'라는 인터넷선박중개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개인 G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고, 2020. 8. 4. G 명의의 계좌로 선박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G은 2020. 8. 4. D가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20. 8. 10. 재차 H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D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이후 G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며, 2020. 8. 24. G에게 중개수수료 및 수리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D는 전남 완도군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양식업에 종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7.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충남 태안군에서 이 사건 선박에 면세유를 주입하여 양식장 내 관리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2020. 6. 29.경 안면도수협으로부터 어업경영자금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D와 피고 또는 G과 피고 사이에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선화

별지